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 (안)

1. 개정사유 및 내용

◆ 개 정 사 유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및 규제 개선을 통하여 학사의 자율적 운영의 극대화 근거 마련 등 효과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함			
◆ 개 정 내 용			
<p>□ 학칙</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편제) 내용 수정 2) 제4조(학년, 학기) ①항 4호 신설 3) 제5조(수업일수) ①항~③항 신설 4) 제6조(휴업일) ①항 내용 추가, ③항 신설 5) 제8조(부속기관) 내용 수정 6) 제11조(편입학 자격) 내용 수정 7) 제12조(저과) 내용 수정 8) 제24조(교과목의분류) ④항 내용 추가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제36조의2(연계,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10) 제40조(심화전공과정 학점) ①항 내용 추가 11) 제43조(학위수여) 표 수정 12)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내용 추가 13) 제45조(졸업) ①항 내용 수정 14) 제45조의2(졸업 유예) 조 신설 15) 제56조(징계처분) ①항 5호 수정 16) 제61조(총장 및 처장) ⑨항~⑩항 신설 ⑨항을 ⑩항으로 이동 </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편제) 내용 수정 2) 제4조(학년, 학기) ①항 4호 신설 3) 제5조(수업일수) ①항~③항 신설 4) 제6조(휴업일) ①항 내용 추가, ③항 신설 5) 제8조(부속기관) 내용 수정 6) 제11조(편입학 자격) 내용 수정 7) 제12조(저과) 내용 수정 8) 제24조(교과목의분류) ④항 내용 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제36조의2(연계,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10) 제40조(심화전공과정 학점) ①항 내용 추가 11) 제43조(학위수여) 표 수정 12)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내용 추가 13) 제45조(졸업) ①항 내용 수정 14) 제45조의2(졸업 유예) 조 신설 15) 제56조(징계처분) ①항 5호 수정 16) 제61조(총장 및 처장) ⑨항~⑩항 신설 ⑨항을 ⑩항으로 이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편제) 내용 수정 2) 제4조(학년, 학기) ①항 4호 신설 3) 제5조(수업일수) ①항~③항 신설 4) 제6조(휴업일) ①항 내용 추가, ③항 신설 5) 제8조(부속기관) 내용 수정 6) 제11조(편입학 자격) 내용 수정 7) 제12조(저과) 내용 수정 8) 제24조(교과목의분류) ④항 내용 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제36조의2(연계,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10) 제40조(심화전공과정 학점) ①항 내용 추가 11) 제43조(학위수여) 표 수정 12)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내용 추가 13) 제45조(졸업) ①항 내용 수정 14) 제45조의2(졸업 유예) 조 신설 15) 제56조(징계처분) ①항 5호 수정 16) 제61조(총장 및 처장) ⑨항~⑩항 신설 ⑨항을 ⑩항으로 이동 		
<p>□ 학칙시행세칙</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장 제2조(학점취득) ①항, ③항 일부 삭제 2) 제3장 제3조(수강신청) ④항 일부 삭제 ⑨항 내용 수정 3) 제3장 제4조(강좌의 폐강) 내용 추가 4) 제4장 제2조(복수전공 영역) ⑦항 1~2호 수정 5) 제4장 제4조(융합<공유>전공) 6) 제6장 제2조(채플) ①항 삭제 7) 제6장 제4조(출석점검 및 기타 사항의 지도) ⑥항 일부 삭제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제7장 제1조(일반요건) ①항 내용추가, ⑥항 내용 추가 9) 제7장 제4조(조기졸업) ⑤항 신설 10) 제7장 제6조(졸업유예) 신설 11) 제9장 제1조(전과의 정원) 내용 수정 12) 제9장 제2조(전과의 제한) ①항~②항 수정 13) 제9조 제4조(절차) ①항 수정, ②항 삭제 14) 제10장 제2조(계절학기) ④항 1호 수정 15) 제15장 제1조(증명서의 종류) 5호 수정 16) 제19장 제33조(흡연 및 음주) ②항 수정 </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장 제2조(학점취득) ①항, ③항 일부 삭제 2) 제3장 제3조(수강신청) ④항 일부 삭제 ⑨항 내용 수정 3) 제3장 제4조(강좌의 폐강) 내용 추가 4) 제4장 제2조(복수전공 영역) ⑦항 1~2호 수정 5) 제4장 제4조(융합<공유>전공) 6) 제6장 제2조(채플) ①항 삭제 7) 제6장 제4조(출석점검 및 기타 사항의 지도) ⑥항 일부 삭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제7장 제1조(일반요건) ①항 내용추가, ⑥항 내용 추가 9) 제7장 제4조(조기졸업) ⑤항 신설 10) 제7장 제6조(졸업유예) 신설 11) 제9장 제1조(전과의 정원) 내용 수정 12) 제9장 제2조(전과의 제한) ①항~②항 수정 13) 제9조 제4조(절차) ①항 수정, ②항 삭제 14) 제10장 제2조(계절학기) ④항 1호 수정 15) 제15장 제1조(증명서의 종류) 5호 수정 16) 제19장 제33조(흡연 및 음주) ②항 수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장 제2조(학점취득) ①항, ③항 일부 삭제 2) 제3장 제3조(수강신청) ④항 일부 삭제 ⑨항 내용 수정 3) 제3장 제4조(강좌의 폐강) 내용 추가 4) 제4장 제2조(복수전공 영역) ⑦항 1~2호 수정 5) 제4장 제4조(융합<공유>전공) 6) 제6장 제2조(채플) ①항 삭제 7) 제6장 제4조(출석점검 및 기타 사항의 지도) ⑥항 일부 삭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제7장 제1조(일반요건) ①항 내용추가, ⑥항 내용 추가 9) 제7장 제4조(조기졸업) ⑤항 신설 10) 제7장 제6조(졸업유예) 신설 11) 제9장 제1조(전과의 정원) 내용 수정 12) 제9장 제2조(전과의 제한) ①항~②항 수정 13) 제9조 제4조(절차) ①항 수정, ②항 삭제 14) 제10장 제2조(계절학기) ④항 1호 수정 15) 제15장 제1조(증명서의 종류) 5호 수정 16) 제19장 제33조(흡연 및 음주) ②항 수정 		

2. 신·구조문 대비표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p>[학칙] 제2조 (편제)</p> <p>① 우리 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7.2.23, 2008.1.28., 2012.11.21.]</p> <p>②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21.]</p>	<p>[학칙] 제2조 (편제)</p> <p>① 우리 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u>임상간호대학원</u>,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7.2.23, 2008.1.28., 2012.11.21.]</p> <p>②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u>임상간호대학원</u>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21.]</p>	제2조 ①~②항 수정
<p>제4조 (학년, 학기)</p> <p>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3. <u>생략</u></p>	<p>제4조 (학년, 학기)</p> <p>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3. <u>현행과 동일</u> 4. <u>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제4조 ①항 4호 신설
<p>제5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수업일수를 <u>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u> <u>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u> [개정: 2013.4.28.]</p>	<p>제5조 (수업일수) ① 수업은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 이상으로 하며, <u>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유연학기(4주, 8주, 10주)를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u></p> <p>③ <u>법정공휴일 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계획서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u></p>	제5조 ①~③항 신설
<p>제6조 (휴업일)</p> <p>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개정: 2006.1.26]</p> <p>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p>	<p>제6조 (휴업일)</p> <p>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u>여름방학</u> 2. <u>겨울방학</u> 3. <u>토요일, 일요일</u> 4. <u>국정공휴일</u></p> <p>② <u>현행과 동일</u></p> <p>③ <u>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부과할 수 있다.</u></p>	제6조 ①항 내용 추가 ③항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p>제8조 (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2.13, 2010.3.22]</p> <p>① 총장 직속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인성교육원</u> [개정: 2013.4.28., 2016.2.1] 2. <u>사회봉사단</u> 3.~6. <u>신설</u> <p>② 부속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u>사회교육원</u> 5. <u>국제문화교육원</u> 6. <u>생활교육관</u> 7.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개정: 2013.4.28.]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체육문화센터 [추가: 2013.4.28.] 12. <u>유치원</u> [개정: 2006.1.26.] 13. <u>기록관</u> [신설: 2008.1.28.] 14. <u>원격평생교육원</u> [신설: 2012.1.9.] 15. 교수학습개발센터 16. <u>학생생활센터</u> 17. 장애학생지원센터 18. 양성평등센터 19. 대학언론사 20. <u>안면도인성교육수련회</u> 21. <u>신설</u> 	<p>제8조 (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2.13, 2010.3.22]</p> <p>① 총장 직속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삭제] 3. <u>산학협력단</u> 4. <u>창업지원단</u> 5. <u>교육혁신단</u> 6. <u>전인교육원</u> <p>② 부속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u>평생교육원</u> [개정: 2017.2.16.] 5. <u>국제교육원</u> [개정: 2017.2.16.] 6. [삭제] 7.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개정: 2013.4.28.]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체육문화센터 [추가: 2013.4.28.] 12. <u>유치원/어린이집</u> [개정: 2006.1.26.] 13. [삭제] 14. [삭제] 15. 교수학습개발센터 16. <u>학생생활상담센터</u> 17. 장애학생지원센터 18. 양성평등센터 19. 대학언론사 20. [삭제] 21. <u>보육교사교육원</u> 	<p>제8조 내용 수정</p>
<p>제11조 (편입학 자격)</p> <p>③ <u>삼육의명대학과의 통폐합(2006년 3월 1일 분)</u>으로 인해 <u>삼육의명대학생들이</u> 정해진 존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 특별편입학 할 수 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부(과)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06.1.26]</p>	<p>제11조 (편입학 자격)</p> <p>③ 통폐합으로 인해 통폐합학생들이 정해진 존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 특별편입학 할 수 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부(과)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06.1.26]</p>	<p>제11조 ③항 내용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제12조 (전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2.13., 2014.10.27.]	제12조 (전과)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2.13., 2014.10.27.]	제12조 내용 수정
제24조 (교과목의 분류) ①~③ 생략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하며 온라인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제24조 (교과목의 분류) ①~③ 생략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하며 온라인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u>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u>	제24조 ④항 내용 추가
제31조의 4 신설	제31조의 4 (K-MOOC 강좌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중 대학이 정한 과목을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총 3학점까지 인정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의 4 신설
제36조의 2 (연계전공) [본조 신설: 2014.4.10] ① 3개 이상의 학위과정이 연계 또는 통합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연계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③ 연계전공과정 이수에 관한 교육과정의 세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의2 연계,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① 2개 이상의 학위과정이 연계 또는 융합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는 자기설계전공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공유)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의 2조 제목 추가 ①~③항 수정 ④항 신설
제40조 (단일전공과정 학점) ① 복수전공, 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제40조 (심화전공과정 학점) ①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심화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0조 ①항 내용 추가
제43조 (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학위에 따라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6.3.15 2006.6.8, 2008.1.28, 2009.3.2., 2014.4.10., 2014.12.23]	제43조 (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학위에 따라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6.3.15 2006.6.8, 2008.1.28, 2009.3.2., 2014.4.10., 2014.12.23.] [별첨 자료 참고]	제43조 표 수정
제43조의 2 (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과 삼육대학교에서 2년 동안 68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양 대학교가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 신설: 2010.5.24]	제43조의 2 (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과 삼육대학교에서 2년 동안 68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양 대학교가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u>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정 대학간 시행세칙을 따로 정한다.</u>	제43조의 2 내용 추가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5조 (졸업)</p> <p>① 학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이수표 참조). [개정: 2014.12.23]</p>	<p>제45조 (졸업)</p> <p>① 학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u>심화</u>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u>자기설계전공</u>, 융합(공유)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이수표 참조). [개정: 2014.12.23]</p>	<p>제45조 ①항 내용수정</p>
<p>제45조의 2 <u>조신설</u></p>	<p>제45조의 2 (졸업 유예)</p> <p>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졸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졸업 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p>	<p>제45조의 2 조 신설</p>
<p>제56조 (징계처분)</p> <p>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p> <p>1.~4. 생략</p> <p>5.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u>그리스도인의 행동규범에 위배된 자</u></p>	<p>제56조 (징계처분)</p> <p>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p> <p>1.~4. 현행과 동일</p> <p>5.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u>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학칙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u></p>	<p>제56조 ①항 5호 수정</p>
<p>제61조 (총장 및 처장)</p> <p>①~⑨ 생략</p>	<p>제61조 (총장 및 처장)</p> <p>①~⑧ 현행과 동일</p> <p>⑨ <u>교수 중 1인을 입학처장으로 하여 입학행정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u></p> <p>⑩ <u>교수 중 1인을 연구처장으로 하여 연구의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u></p> <p>⑪ <u>총장은 제 위원회를 두고 학사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u></p>	<p>제61조 ⑨~⑩ 신설 ⑨항을 ⑩항으로 이동</p>

[현행]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통번역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학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학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자원학과	이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공학사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학사
	화학과	이학사	카메라트로닉스학과	공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학과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연계전공	중독심리	문학사	중독재활	보건학사

[개정안]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통번역 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학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일본어학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시스템 전공	공학사	화학생명과학과	이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공학사	동물생명자원학과	이학사
	메카트로닉스 전공	공학사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아트앤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연계전공	중독심리	문학사	중독재활	보건학사

현행	개정안	비고
<p>[학칙시행세칙]</p> <p>제3장</p> <p>제2조 (학점 취득 - 학칙 제34조)</p> <p>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 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1.28, 2009.3.2]</p> <p>② [삭제: 2008.1.28].</p> <p>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 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09.3.2]</p>	<p>[학칙시행세칙]</p> <p>제3장</p> <p>제2조 (학점 취득 - 학칙 제34조)</p> <p>①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1.28, 2009.3.2]</p> <p>② [삭제: 2008.1.28].</p> <p>③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09.3.2]</p>	<p>제3장 제2조 ①항 ③항 일부 삭제</p>
<p>제3조 (수강신청 - 학칙 제24조, 제34조)</p> <p>④ <u>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기초의약과 학과는 20학점, 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u>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기초의약과 학과는 23학점, 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기초의약과 학과는 17학점, 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9.]</p> <p>⑨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개정: 2015.3.16]</p> <p>1.~2. 생략</p> <p>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u>교무처</u>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p>	<p>제3조 (수강신청 - 학칙 제24조, 제34조)</p> <p>④ <u>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3학점)을 신청함이 원칙</u>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9.]</p> <p>⑨ <u>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u> [개정: 2015.3.16]</p> <p>1.~2. <u>현행과 동일</u></p> <p>3.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u>스미스교양대학</u>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p>	<p>제3장 제3조 ④항 일부 삭제</p> <p>⑨항 내용수정</p>
<p>제4조 (강좌의 폐강) 교과목에 등록된 학생 수가 교양과목인 경우 15명 이하, 전공과목인 경우 7명 이하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11.26, 2006.9.4, 2008.12.4, 2011.4.13., 2012.3.13]</p>	<p>제4조 (강좌의 폐강) 교과목에 등록된 학생 수가 교양과목인 경우 15명 이하, 전공과목인 경우 7명 이하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u>원칙으로</u>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4.11.26, 2006.9.4, 2008.12.4, 2011.4.13., 2012.3.13]</p>	<p>제3장 제4조 내용추가</p>
<p>제4장</p> <p>제2조 (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36조)</p> <p>⑦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u>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u> [개정: 2007.2.23, 2009.3.2]</p> <p>1. <u>교양과목: 33학점 (교양필수 19학점, 영역별 교양선택 14학점)</u> [개정: 2012.3.13]</p> <p>2. <u>전공과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전공: 전공 42학점 • 복수전공: 전공 42학점 	<p>제4장</p> <p>제2조 (복수전공 영역 - 학칙 제36조)</p> <p>⑦ 복수전공시 이수해야 할 <u>전공과목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1 전공: 전공 39학점 2. 복수전공: 전공 36학점 	<p>제4장 제2조 ⑦항 1~2호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조 신설</p>	<p>제4조 융합(공유)전공 - 학칙 제36의 3</p> <p>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합(공유)전공을 할 수 있다.</p> <p>② 융합(공유)전공은 제1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p> <p>③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 전공(제1전공) 이수 학점과 관계 없이 융합(공유)전공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이수 과목 및 이수조건은 융합(공유)전공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p> <p>④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융합(공유)전공 책임(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공유)전공 신청서”를 학사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융합(공유)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p> <p>⑥ 융합(공유)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의 취득학점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되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인정 받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된다.</p> <p>⑦ 소정의 융합(공유)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제1전공으로서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p> <p>⑧ 융합(공유)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 입학 학과(부)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p> <p>⑨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p>	<p>제4장 제4조 신설</p>
<p>6장 채플</p> <p>제2조 (채플 및 예배 참석)</p> <p>① 모든 재학생은 채플에 정규 등록 시마다의 목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기도주간의 출석도 채플에 준한다.</p>	<p>제6장 채플</p> <p>제2조 (채플 및 예배 참석)</p> <p>① 삭제</p>	<p>제6장 제2조 ①항 삭제</p>
<p>제4조 (출석점검 및 기타 사항의 지도)</p> <p>⑥ 채플 및 안식일 출석 관리 및 안내를 위해 설치된 영성상담실에서 모든 출결 업무 및 보충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신설: 2012.1.9.]</p>	<p>제4조 (출석점검 및 기타 사항의 지도)</p> <p>⑥ 출석 관리 및 안내를 위해 설치된 영성상담실에서 모든 출결 업무 및 보충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신설: 2012.1.9.]</p>	<p>제6장 제4조 ⑥항 일부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졸업요건</p> <p>제1조 (일반요건 - 학칙 제45조)</p> <p>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5학점(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수표참조). [개정: 2007.2.23., 2009.11.23., 2014.12.23]</p> <p>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자(1, 2급), 청각장애자(2급),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1~3등급 학생은 「사회봉사-교필」과목이 면제된다. [개정: 2011.2.25., 2014.12.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졸업요건</p> <p>제1조 (일반요건 - 학칙 제45조)</p> <p>① 각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교양필수,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모두 130학점(간호학과는 135학점, 약학과는 165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단일전공(전공 7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 융합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 수표참조). [개정:2007.2.23.,2009.11.23.,2014.12. 23]</p> <p>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자(1, 2급), 청각장애자(2급), 지적장애인,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장애 1~3등급 학생은 「사회봉사-교필」과목이 면제된다. [개정: 2011.2.25., 2014.12.23]</p>	<p>제7장 제1조 ①항 내용수정 및 추가 ⑥항 내용추가</p>
<p>제4조 (조기졸업 - 학칙 제45조)</p> <p>⑤ 신설</p>	<p>제4조 (조기졸업 - 학칙 제45조)</p> <p>⑤ <u>학점초과 취득제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수는 조기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u></p>	<p>제7장 제4조 ⑤항 신설</p>
<p>제6조 <u>조신설</u></p>	<p>제6조 (졸업 유예 - 학칙 제45조의 2)</p> <p>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졸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졸업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가능하며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p> <p>③ 졸업 유예자는 학위수여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p> <p>④ 졸업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졸업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p> <p>⑤ 졸업 유예자는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을 적용한다.</p> <p>⑥ 졸업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졸업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p> <p>⑦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p>	<p>제7장 제6조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9장 학과간 전과</p> <p>제1조 (전과의 정원)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의 여석에 관계없이 전과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p> <p>제2 조 (전과의 제한)</p> <p>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와 또는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2.13.]</p>	<p>제9장 학과간 전과</p> <p>제1조 (전과의 정원)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 모집정원의 100% 이내 범위에서 전과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p> <p>제2 조 (전과의 제한)</p> <p>② 전과는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 또는 제4학년 1학기(7학기째) 초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2.13.]</p>	<p>제9장 제1조 내용수정</p> <p>제2조 ②항 수정</p>
<p>제4조 (절차)</p> <p>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6월초, 12월초)와 제3학년 초(6월초, 12월초)의 전과 신청기간 중에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8.13., 2014.12.23]</p> <p>④ <u>기초의약과학과로의 전과는 공인영어 시험(토익성적-600점 이상 기준)과 면접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한다.</u>[신설 : 2009.3.2., 2009.11.23., 2010.12.17]</p>	<p>제4조 (절차)</p> <p>①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제2학년 초(6월초, 12월초), 제3학년 초(6월초, 12월초)와 제4학년 초(6월초, 12월초)의 전과 신청기간 중에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3.8.13., 2014.12.23]</p> <p>④ 삭제</p>	<p>제9장 제4조 ①항 수정 ④항 삭제</p>
<p>제10장 계절학기</p> <p>제2조 (계절학기)</p> <p>④ (수강신청)</p> <p>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p>	<p>제10장 계절학기</p> <p>제2조 (계절학기)</p> <p>④ (수강신청)</p> <p>1.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p>	<p>제10장 제2조 ④항 1호 수정</p>
<p>제15장 제 증명서 발급</p> <p>제1조 (증명서의 종류)</p> <p>5. 수료증명서: 1학년은 34학점(또는 40학점 이상), 2학년은 68학점(또는 80학점 이상), 3학년은 102학점(또는 120학점 이상), 4학년은 135학점(또는 158학점 이상), 5학년은 170학점을 이수한 자 [개정: 2006.1.26]</p>	<p>제15장 제 증명서 발급</p> <p>제1조 (증명서의 종류)</p> <p>5. 수료증명서: 1학년은 33학점(또는 40학점 이상), 2학년은 65학점(또는 80학점 이상), 3학년은 98학점(또는 120학점 이상), 4학년은 130학점(또는 158학점 이상), 5학년은 170학점을 이수한 자 [개정: 2006.1.26]</p>	<p>제15장 제1조 5호 수정</p>
<p>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p> <p>제33조 (흡연 및 음주)</p> <p>② <u>교외에서의 음주, 흡연</u></p>	<p>제19장 학생지도 및 생활</p> <p>제33조 (흡연 및 음주)</p> <p>② <u>교외의 학교 공식행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u></p>	<p>제33조 ②항 수정</p>